

건설근로자법 개정 주요내용

□ 주요 내용

- 임금 구분 지급 및 확인제도 법제화(제7조의3)
 - 발주자에게 건설근로자 임금의 구분지급 및 내역 확인 의무 부과
 - 건설사업자는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구분하여 매월 지급
 - ※ 법 시행 후 입찰 공고분부터
- 건설근로자 기능인 등급제 도입(제7조의4,5)
 - 경력, 자격, 교육훈련 등에 따라 기능등급별 구분·관리
 - ※ 법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('21.5.27)
- 전자카드제 도입(제13조)
 - 원도급사에게 전자카드 발급 의무 부여
 - ※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('20.11.27)
- 발주자의 공제부금 직접 납부제도 제한적 도입(제13조의2)
 - 원도급사 파산, 발주자 직접 납부 합의시
 - ※ 법 시행 후 입찰 공고분부터
- 퇴직공제금 소멸시효 연장(제21조)
 - 퇴직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(3년→5년) 연장
- 퇴직공제금 수급 요건 확대(제14조)

현 행	개 정
- 납부월수 12개월 이상 피공제자가 퇴직·사망 또는 60세인 경우 지급	<좌동>
<신설>	- 납부월수 12개월 미만 피공제자가 사망·65세 이상인 경우도 지급 추가

※ 퇴직공제 최초 시행 시기('98.1월)까지 소급 적용

- 임금 구분 지급·확인제 및 전자카드 도입 관련 법 위반시 과태료* 처분(제26조)
 - * 300만원이하 과태료

□ 시행일

- 공포일('19.11.26)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